

2010년 제32차 외국자본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

첫 번째: 「2003년 제56차 외국자본투자법」의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:

제8조 이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득한 회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한다:

- (1)회사가 운영계약과 사업이행건설계약 외 다음의 분야에서 주요활동을 이행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한다: (ㄱ) 「2008년 제61차 GCC국가 간 통합산업구성법」에 따른 산업
 - (ㄴ) 「2003년 제27차 채굴법」에 따른 채굴
 - (ㄷ)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상품수출
 - (ㄹ)관광호텔과 마을운영
 - (ㄴ)농작물생산과 농산물가공과 가축양육과 동물상품 및 농산품의 가공 및 제조
 - (ㄷ)생선조업과 가공과 생산과 양식
 - (ㄸ)대학, 단과대학, 대학원, 사립학교의 교육 및 아동스포츠와 교육센터와 학원
 - (ㄹ)개인병원설립을 통한 의료복지
- (2)세금은 경우에 따라 생산개시일자 또는 활동이행일자로부터 5년간 면제하며, 필요 시 면제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.
- (3)이 조에 명시한 면세규정은 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조건과 규칙과 절차에

따라 재정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적용한다.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재정 및 에너지자원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칙에 따른 재정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면세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(4)이 조의 제(1)항에 명시한 분야에서 주요활동을 이행하는 회사는 첫 5년의 면세기간 동안 발생한 순수손실금을 공제하거나 이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세기간 동안의 공제와 이전은 순수손실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행하여야 한다. 면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금에 대하여 순수손실금의 공제규정을 적용한다.

(5)이 조의 제(4)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순수손실금은 첫 5년의 면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금의 증가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며, 이 기간 동안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를 결정한 소득을 공제한다. 손실금 또는 면세소득은 과세소득지정규정을 고려하여 지정한다.

두 번째: “GCC국가 간 통합산업구성법”부분은 외국자본투자법에 명시한 “산업구성 및 육성법”으로 수정한다.

세 번째: 「2003년 제56차 외국자본투자법」의 제8조(중복조항)부분은 폐지한다.